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19구급대원의 교육·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·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< “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(안 제27조의2제1항)” >

-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(소방서, 소방본부)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(응급의학전문의 부족, 졸속평가)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,
- 구급지도의사의 선임·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·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※ 구급지도의사 선임현황: 총247명(응급의학전문의 213명, 신경과, 산부인과 등 기타분야 34명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·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
별로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의2(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)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(이하 “구급지도의사”라 한다)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27조의2(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의 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·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별 로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</u>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119구급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637